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26일

나. 발 의 자: 남완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3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안전교통경국장 유광순)

가. 제안이유

❍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경진)

❍ 본 조례안은

-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 신청방법 및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와 안 제7에서는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및 재정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지난해 8월 한국ITS학회 논문지에 실린 '서울시 마을버스 매출액 및 흑자업체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마을버스 적자업체 수는 전체 139개 업체 중 59개(42%)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은 112개(80%)로 2배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처럼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6

발의연월일: 2023. 6. .

발 의 자: 남완현、이순우、이규선、이성수 의원(4인)

1. 제안이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적정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신청 및 지원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지원 제외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조, 제50조～제5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6. 8. ~ 6. 12.):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다.

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재정지원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대상업체 선정 등 재정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 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외) 구청장은 제6조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체 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등록 차량대수		서울시 재정 지원 차량대수		서울시 재정 미지원 차량대수	
월 운송수입금					
1일 1대당 수입금					
서울시 지원금액					
구 재정지원 신청금액					
구 재정지원금 사용계획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등포구청장 귀하

거래은행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1. 월 운행률 내역 2.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현금수입, 광고수입) 내역서 3. 차량등록현황 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내역서			